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5. 1 선고 2018가합35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교회

변론 종결 2019. 4. 17.

판결 선고 2019. 5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 - 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4, 15, 16, 3,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28.8㎡,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6, 19, 20, 7,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나)부분 71.9㎡,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17, 18, 19, 6,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30.2㎡를 철거하고, 같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며,
 - 나. 41,220,223원 및 2018. 11. 13.부터 전항 기재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4,327,7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판사강재철

판사장현자

판사심우성

별지

1) 2018가합35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의 청구취지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(가) 부분 28.8m², (나) 부분 71.9m², (다) 부분 30.2m²를 철거하고, 같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며, 41,220,223원 및 2018. 11. 13.부터 전항 기재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4,327,7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